

# 퇴직연금보험(무배당)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(DB)



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**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**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  
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**약관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 
'**상품설명서**'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,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**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**, 동 내용을 반드시  
이해하시고 **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** 바랍니다.

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'원리금보장형' 상품으로, 은행의 예·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.

본 상품은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시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
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, IBK연금보험 홈페이지([www.ibki.co.kr](http://www.ibki.co.kr)) 또는 퇴직연금 콜센터(☎1661-4117)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① 상품내용

| 구 분         | 내 용  |  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|---|
| 상품유형        | 원리금보장형   |  |            |   |
| 가입대상        | 무배당 IBK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계약자(사용자)  |  |            |   |
| 상품개요        | 계약자(사용자)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'고정금리' 상품입니다.  |  |            |   |
| 상품구조        | 계약자(사용자)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"단위보험"이 설정되며, 계약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(이율보증기간)을 설정합니다.<br><table border="1"><tr><td>이율보증기간</td><td>1 / 2 / 3 / 4 / 5 년</td></tr></table><br>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'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'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·적립되며,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  |  | 이율보증기간     | 1 / 2 / 3 / 4 / 5 년   |
| 이율보증기간      | 1 / 2 / 3 / 4 / 5 년  |  |            |   |
| 보험기간        |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  |  |            |   |
|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|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「이율보증형 적용이율」로 하며,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.<br><table border="1"><tr><td>이율보증형 적용이율</td><td>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(*)를 기준이율로 하며,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.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합니다.<br/>*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/td></tr></table><br>※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,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br>( <a href="http://www.ibki.co.kr">www.ibki.co.kr</a> > 퇴직연금공시실 > 사업자공시 > 원리금보장상품현황 > 이율보증형 ) |  |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|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(*)를 기준이율로 하며,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.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합니다.<br>*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
|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|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(*)를 기준이율로 하며,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.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합니다.<br>*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 |  |            |   |
| 만기 재설정      | 계약자(사용자)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가입자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 설정을 위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,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.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회사가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한 날(이하, "재설정한 날"이라고 합니다)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.  |  |            |   |

# 퇴직연금보험(무배당)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(DB)

| 구 분            |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중도해지에<br>관한 사항 | <p>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(상품변경 포함)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단위보험 설정시점(재설정된 경우 재설정시점)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「이율보증형 적용이율 × 80%」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. 이 때, 중도해지이율 계산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.</li><li>- 단, 다음의 사유(특별중도해지 사유)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</li><li>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</li><li>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<li>④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</li><li>⑤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</li><li>⑥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하는 경우</li></ul></li></ul> |

## ② 기타 안내사항(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예금자<br>보호여부                    | <p><b>비대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li></ul>   |
| 청약철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청약철회는 관계법규에 따라 “일반금융소비자”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(보장성 상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2조 제 7항 제 3호의 “전문금융소비자”에 해당됩니다.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상품특성 상 청약철회 시 반환되는 금액(납입한 부담금)보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것과의 유불리를 판단해보시고 청약철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li><li>일반금융소비자인 가입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부담금 등을 돌려드립니다.</li><li>단,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(단,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)</li></ul> |
| 위법계약<br>해지                     | <p>계약자(사용자)는 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</p>  |
| 민원처리 및<br>분쟁조정<br>절차에 관한<br>사항 | <p>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팅센터나 콜센터(1577-4117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ibki.co.kr">www.ibki.co.kr</a>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, <a href="http://www.fss.or.kr">www.fss.or.kr</a>),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 1372)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단,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.</p>   |

# 퇴직연금보험(무배당)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(DB)

## ■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| 구 분   | 보험회사  | 외부기관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상담·민원 | 전화상담<br>(☎: 1577-4117 )<br><br>웹모바일<br>(☞: <a href="http://www.ibki.co.kr">www.ibki.co.kr</a> ) | 생명보험협회 | 콜센터<br>인터넷<br>상담    | ① 02-2262-6565<br><a href="https://consumer.insure.or.kr/counselCase/qna/list.do">https://consumer.insure.or.kr/<br/>counselCase/qna/list.do</a> |  |
| 분쟁조정  |   | 금융감독원  | 콜센터<br>e-금융<br>민원센터 | ① 국번없이 1332<br><a href="https://www.fcsc.kr/">https://www.fcsc.kr/</a>   |  |
|       |   | 한국소비자원 | 콜센터                 | ① 국번없이 1372  |  |



## ■ 주요내용 안내확인 (설명 받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해 “확인”란에 (✓)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)

| 주 요 내 용  |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b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b>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<b>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한 날의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</b> 되며, 홈페이지에서 공시되는 적용이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단위보험별로 <b>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(상품변경 포함)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</b> 됩니다.(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)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
## 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

### 설 명 내 용

상품유형, 가입대상, 상품개요, 상품구조, 보험기간,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,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

예금자보호여부, 청약철회, 위법계약해지,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

본 상품설명서 및 운용설명서를 교부받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들었음을 확인합니다.

※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.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'상품설명 내용'을 회사는 고객(계약자 또는 가입자)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, 고객은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아울러, **동 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**되어 있으므로 **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(전자서명 포함)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|     |      |
|-----|------|
| 고객명 | (서명) |
|-----|------|

영업담당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서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였고, 설명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.

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
| 영업담당자 | [소속] | [성명] | (서명·날인)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